

보충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면)

류재구 의원

□ 질 문

- 북사골문화센터의 2층 영화상영관은 당초 영사실 위치가 저층으로 되어 있어 화면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 위층으로 정정하였고, 현재는 무대 앞 좌우측의 돌출벽이 있는 등 최초설계와 시공시 복합상영관을 예측하지 못하고 건립한 이유는?
시민회관 영사실의 길유리가 12mm인데 영사기 렌즈 앞은 아직도 5mm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변

- 북사골문화센터의 2층 대강당은 공연,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지난 국제영화제의 영화상영시 영사기의 화면에 뒷좌석 일부 가림이 있었으나 99. 1월 경 영사기를 고정설치시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뒷좌석의 화면가림은 해소되었으며 무대 앞 좌우측의 돌출벽은 분장실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관람객이 돌출벽 앞에 앉아서 영화를 관람할 경우 크게 지장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북사골문화센터의 건립취지가 영화의 전용관으로 당초 설계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은 시민회관 영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국제영화제 행사시 시민회관의 영사상태가 대체로 어둡다는 지적에 따라 제2회 영화제 때에는 기존의 12mm 두께의 영사실 코팅유리를 5mm 맑은 유리로 교체해달라는 영화계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98. 12. 10일 영사기 렌즈 앞 중앙부분을 5mm 맑은 유리로 교체하여 흐림을 해소하였으며, 코팅유리를 완전해체할 수 없는 이유는 영사기기의 소음차단과 먼지에방의 목적으로 외부와 차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질문 답변서

- 서면질문서 제출
 - 99년 4월 15일 김삼중 의원 제출
 - 99년 4월 19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99년 5월 3일 시장 제출

김삼중 의원

질 문

○ 현행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열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장운영하여 IMF로 고통받고 있는 도시 서민들의 가계부담(사설 독서실 이용, 학원수강 중단 등)을 덜어줄 수 없는지?

답 변

○ 현 황

현재 도서관 열람시간은 부천시시립도서관열람규칙 제3조(열람시간) 규정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시립도서관(본관)	심곡분관	비 고
개 관 일	94. 7. 1	85. 3. 15	
부 지	2,158평	601평	
건 물	1,330평	758평	
좌 석	1,262석	718석	
장 서	91,361권	60,522권	
운영시간	07:00~22:00	07:00~22:00	
자 료 실 운영시간	09:00~18:00	09:00~18:00	
휴 관 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일일평균 이 용 자			

○ 문제점

• 개관시간

종전에는 도서관 열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운영을 하였으나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1시간 동안 입관자가 10~20여 명 이내로 이용자가 적었으며, 각 열람실에 3, 4명이 입실하여도 열람실 조명을 전체 점등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열람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게 되었음.

• 퇴관시간

퇴관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퇴관)까지 열람실 잔여 이용자가 30~40여 명 내로 열람시간 연장에 따른 열람효과가 적은 편임.

• 열람실 청소

도서관 열람시간을 12시까지로 연장운영할 경우 각 열람실 청소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도서관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열람자 귀가

도서관 주변이 공원 등으로 활용되어 늦은 시간에 비행청소년들이 증가될 경우 도서관 이용자 귀가시 피해 및 청소년 선도문제가 예상됨.

○ 대책

열람시간 연장운영은 장기과제로 북부도서관 개관운영시 여분수렴 및 이용현황 파악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 서면질문서 제출

- 99년 5월 8일 강진석 의원 제출
- 99년 5월 18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99년 5월 25일 시장 제출

강진석 의원

□ 질 문

1. 원미구 중2동 112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그랜드모텔 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질문하오니 상세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가 발행한 상업·유통시설용지매각 안내서를 살펴보면 여관신축예정부지가 L블록 38롯트에 위치하고 면적은 368.7㎡(111.5평)이며 분양예정가격이 368,644천원으로 1996. 7. 30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중도금 및 잔금납입 등 당시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계약일자 : 96. 7. 30, 면적 : 368.7m'(111.5평), 용지판매가 : 781,644,000원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 78,164,400원은 96. 7. 30일 납부하고 잔금액에 대하여 연 10% 이자와 연체 이자 연 18%로 3년 동안 6회(6개월 단위) 균등분할 납부토록 계약하였으며, 1회차분 154,474,090원은 97. 2. 6일 납부하고 2회차분, 3회차분, 4회차분을 98. 12. 29일까지 체납하였으며, 98. 12. 30일에 체납분 491,604,560원을 납부하였으며, 5회차 납부금 128,796,160원 중 99. 4. 24일 80,000,000원을 납부하고 미납액 54,131,490원은 현재 연체되어 있습니다.

6회차 최종 납부금 122,801,910원은 99. 7. 30일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 L-38블록 대금 분할 수납 내역

요 수 납			대 금 납 부 사 항				
회수	금액	납부기일	원 금	할부이자	연체가산금	계	납부일자
계	904,712,800		781,644,000	123,068,800			
납부계			610,512,510	117,266,890	76,463,650	804,243,050	
계약금	78,164,400	96. 7. 30	78,164,400			78,164,400	96. 7. 30
1	153,942,680	97. 1. 30	118,479,600	35,463,080	531,410	154,474,090	97. 2. 6
2	146,009,580	97. 7. 30	117,000,000	29,009,580	37,298,440	183,308,020	98. 12. 30
3	140,592,320	98. 1. 30	117,000,000	23,592,320	23,157,280	163,749,600	98. 12. 30
4	134,405,750	98. 7. 30	117,000,000	17,405,750	10,141,190	144,546,940	98. 12. 30
5	128,796,160	99. 1. 30	62,868,510	11,796,160	5,335,330	80,000,000	99. 4. 24
			54,131,490				
6	122,801,910	99. 7. 30	117,000,000	5,801,910			

□ 질 문

○ 부동산 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어야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되는데 잔액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준 사유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공영개발사업 토지구정(별지 제19호서식)의 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 이전)의 내용은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토지구정 103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락)에는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락은 매각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분할

수납대금 완납 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정기에금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IMF경제상황으로 시중은행의 자금경색으로 중동1124(L-38)번지의 토지대금이 18개월 동안 체납되어 납부가 불확실하여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보증보험회사 지급담변과 5억 여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전체금액의 대책보다 잔금액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질 문

- 아직도 상당액의 잔액이 납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입금이 되는 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현재 체납액은 54,131,490원이며 99. 7. 30일에 122,801,910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미이행시 대한보증보험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질 문

- 1992년 5월에 부천시가 발행한 “도시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칭한다)에 의하면 앞서 명시된 부지는 위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1층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제2항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부분은 외벽면적의 1/2 이상을 투시 가능한 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7. 3. 10 도시계획 시행지침을 완화하여 1층도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규제를 완화는 하였으나 97. 3. 28 건축허가시에는 설계상으로 상기에 명기된 2가지 사항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98. 3. 7일 1차 설계변경시에는 1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규제완화지침에 의거하여 98. 5. 23일 2차 설계 변경시에 1층까지 숙박시설로 설계변경을 허가해 주었으나 지침 제15조2항 규정에는 불부합되고 있는 바,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원미구 중2동 1124번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는 97. 2. 19일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79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97. 2. 28일 건축허가하였고
- 97. 3. 1일 변경된 도시설계시행지침에 따라 98. 3. 3일 및 98. 5. 21일 2차에 걸쳐 1, 2, 3층을 일반숙박시설 용도로 설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계법령 검토 후 건축허가하였습니다.
- 97. 2. 28일 건축허가 당시 도시설계지침 획지별 건축물 용도표상 숙박시설은 1층을 제외하여 허용하였고, 97. 3. 1일자로 변경된 도시설계지침에는 전층을 허용토록 하였으나 1층에 숙박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이 약화되는 바 이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외벽면적의 1/2 이상 투시가능토록 한 규정과는 상충되어 도시설계시행지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 도시설계시행지침 제130조(도시설계지침의 조정)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도시설계의 기본개념 범위 내에서 규제사항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침 조정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관계로 지침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 문

- 마지막으로 건물사용 승인을 해준 98. 8. 21일부터 L블록 39롯데(면적 391.㎡, 분양예정가격 668,434천원)의 부지를 여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용료는 납부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98. 9. 18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 1,356,230원을 납부하였으나 민원을 고려하여 98. 9. 22일 반납하였습니다. 당시부터 여관측에서 형평성문제(텃밭무료, 임시 무료주차장사용, 부천시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사용료 납부거부) 제기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관측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건축공사 차광막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음.